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5. 11. 21

발 의 자 : 심상정·강기갑·권영길
노회찬·단병호·이영순
천영세·최순영·현애자
임종인 의원 (10인)

제안이유

정부가 단기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다자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우대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국내시장의 급속한 개방 확대는 상품·서비스의 수입증가와 외국기업의 급속한 국내진출을 유발하고 내국기업의 중국·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가속화시켜 산업공동화를 촉진하는 등 농어업·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야기하여 실업의 증가, 일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농어업인의 추가적 경영악화, 일부 지역경제의 악화 등 무역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국가무역정책에 따라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근로자·농어업인·산업 및 지역에 대하여 경영혁신·사업전환·폐업·근로자전직·농어업경쟁력제고 등을 위한 지원을 통해 무역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모든 산업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 등은 효과적으로 무역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함(안 제5조).

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위원회를 두고, 무역조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국가무역정책으로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은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기업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라.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단기경영자금·경쟁력확보자금·조세특례·사업전환소요자금·기업구조조정조합출자·폐업보조금·출자총액제한제외의 지원을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

- 마. 국가무역정책으로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19조).
- 바.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전직사업보조금·고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직업교육보조금·전직수당·건강보험료·조기재취업수당·창업수당을 지원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
- 사. 국가무역정책으로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은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농어업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농어업인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29조).
- 아. 무역조정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쟁력제고자금·경영안전지원금·폐업보조금을 지원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
- 자. 산업자원부장관은 스스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국가무역정책으로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산업을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조정산업으로 지정함(안 제34조).
- 차.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산업의 무역조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무역조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지원함(안 제36조 및 제37조).
- 카. 산업자원부장관 등은 스스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국

가무역정책으로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을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함(안 제38조).

타. 무역조정지역의 시장·군수는 무역조정지역의 무역조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자금을 보조하고 무역조정지역의 경쟁력제고를 지원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파. 정부는 국가무역정책으로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설치·운영 함(안 제42조부터 제48조).

하.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근로자·농어업인·산업 또는 지역의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근로자·농어업인·산업 또는 지역의 지정취소처분에 앞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9조 및 제50조).

법률 제 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다자무역협정 체결, 관세·비관세 정책 등의 국가무역정책으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산업·기업·근로자·지역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혁신·사업전환·폐업·근로자전직·농어업 경쟁력제고 등을 통하여 무역피해의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무역정책”이라 함은 국가의 외국정부 등과의 자유무역협정·다자무역협정 체결, 수입·수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외국 수입·수출에 대한 관세율·비관세 규제 등의 변경, 외국인 투자 및 자본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국가무역정책 중 기업·근로자·농어업인·산업 또는 지역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정책을 말한다.
2. “무역피해”라 함은 국가무역정책으로 인하여 수입증가 또는 국외 투자·외국인투자의 증가로 기업의 생산량·판매량의 감소, 근로자의 실업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 농어업인 수입의 감소 등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

3. “유사상품등”이라 함은 특정 기업·농어업인 등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하여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서비스를 말한다.
4. “무역조정”이라 함은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근로자·농어업인·산업 또는 지역에 대하여 경영혁신·사업전환·폐업·근로자전직·농어업 경쟁력제고 등 해당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데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5. “무역조정지원대상자”라 함은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근로자·농어업인 등을 말한다.
6. “무역조정계획”이라 함은 무역조정지원자가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혁신·사업전환·폐업·근로자전직 또는 농어업 경쟁력제고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정부는 국가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무역조정지원대상자의 이해를 얻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무역피해가 있기 전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포함한 효과적인 무역조정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조정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무역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1. 무역조정지원대상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2. 무역조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무역조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무역조정지원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역조정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무역조정위원회) 무역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무역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정무직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각 무역조정지원대상자 단체의 대표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대책의 수립
2. 무역조정지원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산업 지정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2 이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조정지원시책과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을 추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조정위원회는 무역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종합대책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

④실태조사의 절차·방법·조사비용산정,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무역조정지원센터) ①정부는 무역조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역조정계획 관련 정보제공·컨설팅·타당성분석·조사활동 등 무역조정지원대상자의 무역조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2. 무역조정지원대상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관련 정보제공, 경영·기술컨설팅, 상담·안내, 민원업무처리
3. 무역조정지원대상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사업 이외의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지원센터에는 무역조정계획·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컨설팅업무 등을 담당하는 무역조정전문요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하 이 조에서 “전문요원등”이라 한다)을 둔다.

④지원센터는 제2항제1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지원센터의 조직·업무·운영방법 및 전문요원의 자격·직무,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전문요원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무역조정계획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무역정책으로 인하여 유사상품등의 수입증가로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액 중 100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의 생산액·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산·영업시설을 해외로 이전 하였거나 이전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수탁기업체로서 생산량·판매량의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의 국내 공급증가로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현저한 기업
4.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5. 그 밖에 무역조정계획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무역조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 사항의 전문성·복잡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및 지정여부의 통보절차·방법, 그 밖에 지정신청 및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무역조정계획의 작성기준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이 해당 기업의 기본영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바탕으로 당해 기업의 경쟁력확보 등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속 근로자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하며, 적정한 비용을 소요하는 계획일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역조정지원 기업(이하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

정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단기경영안정자금) ①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기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보조의 기준 및 지급방법·절차, 그 밖에 단기경영안정자금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금 보조) ①정부는 무역조정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당해 무역조정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방법·절차, 그 밖에 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금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세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무역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에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전환소요자금의 융자·투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전환을 추진하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사업전환소요자금”이라 한다)을 용자 또는 투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자·투자의 방식·절차, 그 밖에 사업전환 소요자금의 용자·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①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비율·방법·절차, 그 밖에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폐업보조금) ①정부는 무역조정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할 수 있다.

1. 생산설비 폐기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2. 환경부과금 등 각 종 부담금
3. 그 밖에 폐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방식 및 절차, 그 밖에 폐업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의 특례)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9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한 근로자는 무역조정계획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전실직 또는 부분실직(노동시간 감소로 수입이 감소한 자를 포함한다)에 처하였거나 그 위험에 처한 자

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나. 국가무역정책에 따라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하려는 기업

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함에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기업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후 폐업을 결정한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농어업인으로 지정된 후 폐업 결정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노동조합은 해당 조합근로자의 무역조정근로자 확인을 노동부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의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 지정신청과 동시에 소속근로자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 해당 여부의 확인을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근로자 해당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지정신청 사항의 전문성·복잡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및 지정여부의 통보의 절차·방법, 확인요청의 절차·방법, 그 밖에 지정신청·통보 및 확인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정취소)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이하 “무역조정근로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받은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1조(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의 무역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조사활동
2. 재취업 상담·컨설팅 및 직업알선
3. 직업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전직지원제도 및 고용촉진제도의 수급 지원
5. 그 밖에 전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

제22조(전직사업보조금) ①정부는 무역조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근로자의 전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체직업교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직업교육
3. 구직컨설팅의 시행
4. 취업지원 프로그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 전직 촉진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 및 집행방법, 그 밖에 전직사업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①정부는 무역조정기업의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해당 무역조정기업 외의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무역조정기업의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

조정기업이 무역조정 지원을 받은 후 해당 무역조정기업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때에는 장려금(이하 “재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산정 방법, 그 밖에 고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직업교육보조금) ①정부는 무역조정근로자가 제19조제1항의 무역조정계획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창업교육을 이수하거나 정규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훈련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한계 및 지급 방법, 그 밖의 직업교육자금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직수당) ①정부는 실직한 무역조정근로자가 무역조정계획 중 전직계획(무역조정근로자의 창업을 포함한다)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퇴직당시 해당 근로자의 급여의 100분의 80 이상의 급여액 이내에 2년을 한도로 전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②정부는 무역조정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무역조정근로자의 퇴직 당시 급여 이내의 범위에서 전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방법 및 지급한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전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건강보험료의 보조) ①정부는 실업에 처한 무역조정근로자가

「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무역조정 근로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건강보험료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기재취업 및 창업 수당) ①정부는 제25조의 전직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무역조정근로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조기창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창업수당은 전직수당 미지급일수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조기창업수당의 지급 방법·절차, 그 밖에 조기재취업수당 및 창업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28조(무역조정농어업인의 지정) ①국가무역정책에 따라 수입된 유사 상품등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조정농어업인지정신청(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농어업인 중 농어업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업인단체는 해당 단체회원의 무역조정농어업인 확인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 농어업인의 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신청 사항의 전문성·복잡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역조정지원 농어업인(이하 “무역조정농어업인”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무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의 범위와 이를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무역조정농어업인 지정신청 방법·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및 지정여부의 통보의 절차·방법, 무역조정지원농어업인 확인, 무역조정 대상 상품·서비스 등의 공고, 그 밖에 지정신청·통보 및 무역조정 대상 상품·서비스 등의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정취소)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조정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농어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농어업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농어업인으로 지정받은 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30조(무역조정농어업인경쟁력제고자금의 보조·용자) ①정부는 무역

조정농어업인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이하 “무역조정농어업인경쟁력제고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 확대 사업
2. 용수공급시설 및 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사업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사업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촉진 사업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보조 및 용자의 방법·절차, 그 밖의 무역조정농어업인경쟁력제고자금의 보조·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경영안전지원금) ①정부는 무역조정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무역조정농어업인이 무역피해로 입은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안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영안전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그 밖의 경영안전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폐업보조금) ①정부는 무역조정농어업인이 농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할 수 있다.

1. 생산설비 폐기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2. 그 밖에 폐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폐업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규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한 무역조정농어업인의 경쟁력확보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농어업인”으로 본다.

제6장 산업에 대한 지원

제34조(무역조정산업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합(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조정지원 산업(이하 “무역조정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무역조정기업으로 선정된 10개 이상의 기업이 동종 또는 유사 상품·서비스 등을 생산·제공하는 산업
2. 국가무역정책에 따라 당해 산업 전반에 무역피해가 현저하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무역조정산업의 지정이 없

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기업·기업단체·노동조합·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산업 지정신청(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 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 사항의 전문성·복잡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공고, 지정신청 및 지정여부의 통보의 절차·방법, 그 밖에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결정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정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역조정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산업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산업으로 지정받은 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36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노동조합·기업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조정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무역조정산업의 무역피해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조정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경쟁력제고 지원) 정부는 무역조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정보제공·연구지원·컨설팅·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지역에 대한 지원

제38조(무역조정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시·군·구 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농산어촌(이하 이 장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조정지원 지역(이하 “무역조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기업, 근로자 또는 농어업인이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 또는 무역조정농어업인으로 지정된 지역
2. 국가무역정책에 따라 지역 전반에 무역피해가 현저하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무역정책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혹은 비율 이상의 기업이 폐업·이전하거나 폐업·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무역조정지역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장·군수(2개 이상의 시와 군을 포함할 경우 시·도지사로 한다) 또는 농어업단체·노동조합·기업·기업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산업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조정지역 지정신청(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 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신청사항의 전문성·복잡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공고, 지정신청 및 지정여부의 통보의 절차·방법, 그 밖에 지정공고, 지정신청 및 결정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정취소) 산업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역조정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역조정지역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역으로 지정받은 때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40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 ①무역조정지역의 시장·군수(2개 이상의 시와 군을 포함할 경우 시·도지사로 한다)는 해당 무역조정지역의 농어업단체·노동조합·기업단체·시민사회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조정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무역조정지역의 무역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조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제41조(경쟁력제고 지원) 정부는 무역조정지역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정보제공·연구지원·컨설팅·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무역조정지원기금

제42조(무역조정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무역정책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그 밖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4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조직·운영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단기경영안정자금
2. 경쟁력확보를 위한 보조 자금
3. 사업전환소요자금
4.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5. 폐업보조금
6. 전직사업보조금

7. 무역조정근로자 전직지원 사업
 8. 고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9. 직업교육보조금
 10. 전직수당
 11. 건강보험료 보조
 12. 조기재취업 및 창업 수당
 13. 무역조정농어업인경쟁력제고자금
 14. 경영안정지원금
 15. 무역조정 사업계획 수립·추진 지원
 16. 경쟁력제고 지원
 17. 그 밖에 무역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 제47조(기금운용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기금사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48조(기금의 회계기관)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9장 보 칙

- 제49조(공청회) ①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농어업인 지정신청,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산업 지정신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역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50조(청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취소
 2.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산업의 지정 취소
 3.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역의 지정 취소
- ②노동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농어업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지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1조(보고) ①무역조정기업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 이행의 착수보고서를, 동 지정을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동 완료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 지원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무역피해 기업, 관계기관 등에 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무역조정기업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3조(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연구) ①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무역정책의 효과분석을 비롯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연구소·대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 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농어업인으로 지정받은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산업으로 지정받은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지역으로 지정받은 자

제55조(과태료) ①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52조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비 용 추 계 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기업·근로자·농어업인·산업 또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I. 예산수반 조문

○ 기업에 대한 지원

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금보조(제13조)와 사업전환소요자금의 융자·투자(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제16조), 폐업의 보조(제17조), 전직사업자금 지원 등(제22조), 고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지원(제23조)

○ 근로자에 대한 지원

직업교육자금 지원(제24조), 전직수당 지원(제25조), 건강보험료 지원(제26조), 조기재취업 및 창업 수당 지원(제27조)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경영안정지원금(제31조), 폐업의 지원(제32조)

○ 산업에 대한 지원

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제36조)

○ 지역에 대한 지원

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제40조)

○ 기타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8조)

II. 기본가정

1. 기업에 대한 단기경영안전자금지원(제12조),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제15조), 무역조정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제고 지원(제30조) 등은 융자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의 예산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무역조정산업의 경쟁력제고 지원(제37조), 지역의 경쟁력제고 지원(제41조)은 포

괄적인 지원근거규정으로 예산소요액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3. 한·미·일·중국·ASEAN FTA 등 4개 FTA가 체결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으로, 그 영향으로 피해기업은 5만 3,545개 피해근로자는 51만 8,480명이라고 가정하고 추계함.

4.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하고, DDA협상은 그 협상이 종결되어야 추정이 가능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5. 2004년 농어업가구수는 131만 가구임.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은 전체가구 중 50%를 지원하고 폐업지원은 전체가구중 1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함.

6. 예산을 10년에 걸쳐 집행한다고 가정.

Ⅲ. 비용추계

1.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경쟁력확보를위한자금보조(제13조)
한 업체당 평균 6,000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
 $53,545\text{기업} \times 6,000\text{만원} = 3\text{조 } 2127\text{억원}$

②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제16조)
출자금을 70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고 가정.
지원액 = 700억원

③ 폐업의 지원(제17조)
5만 3,545개 기업 중 10%가 폐업하고 업체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
 $5,354\text{기업} \times 5,000\text{만원} = 2,677\text{억원}$

④ 전직사업자금 지원(제22조)
전직사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피해근로자중 10%가 전직 사업을 받는다고 가정.
 $51,848\text{명} \times 200\text{만원} = 1,036\text{억 } 9,600\text{만원}$

⑤ 고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제23조)

전체근로자 1인당 150만원(30만원×5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가정.
 $51\text{만 } 8,480\text{명} \times 150\text{만원} = 7,777\text{억 } 2\text{천만원}$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교육지원(제24조)
제22조의 전직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인원 466,632명에게 300만원씩 2년을 지원(600만원)한다고 가정.
 $466,632\text{명} \times 600\text{만원} = 2\text{조 } 7,997\text{억 } 9,200\text{만원}$

② 전직수당 지원(제25조)
전체 피해근로자에게 매달 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960만원)하는 것으로 가정.
 $51\text{만 } 8,480\text{명} \times 960\text{만원} = 4\text{조 } 9,774\text{억 } 800\text{만원}$

③ 건강보험료지원(제26조)
20%의 피해근로자에게 1인당 1년 동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
 $10\text{만 } 3,696\text{명} \times 20\text{만원} = 207\text{억 } 3,920\text{만원}$

④ 조기재취업 및 창업수당 지원(제27조)
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운영한다고 가정. 지원액 = 5,000억원

3. 농어업인 지원

①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체 농가 중 50%를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
 $65\text{만가구} \times 1,000\text{만원} = 6\text{조 } 5,000\text{억원}$

② 폐업지원
전체 농가 중 10%를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
 $13\text{만 } 1,000\text{가구} \times 1,000\text{만원} = 1\text{조 } 3,100\text{억원}$

4. 기타

① 산업의 무역조정계획의 수립·추진
50개 업종에 평균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
 $50 \times 300\text{억원} = 1\text{조 } 5,000\text{억원}$

② 지역에 대한 지원

30개 지역에 평균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

30×300억원 = 9,000억원

③ 무역조정센터설치 및 운영(제10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준하여 설치된다고 가정하고 10년간 매년 140억원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등에 위탁사업을 위해 매년 140억원이 필요하다고 가정.

280억 ×10년 = 2,800억원

[표 1] 예산소요액 총계

(단위: 만원)

구 분	내 용	금액(만원)
기 업	경쟁력확보를위한자금보조	321,270,000
	조합출자	7,000,000
	폐업 지원	26,770,000
	전직사업자금 지원	10,369,600
	고용장려금 등 지원	77,770,000
	소 계	443,179,600
근로자	직업교육비 지원	297,979,200
	전직수당 지원	497,740,800
	건강보험료지원	2,073,920
	조기재취업 등 지원	50,000,000
	소 계	847,793,920
농 업	폐업 지원	131,000,000
	경영안정자금지원	650,000,000
	소 계	781,000,000
기 타	산업에 대한 지원	150,000,000
	지역에 대한 지원	90,000,000
	무역조정센터 설치	28,000,000
	소 계	268,000,000
총 계		2,339,973,520

총예산소요액 = 약 23조 3,997억원

연간 평균 예산소요액 = 2조 4,000억원